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8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 .....       | 2  |
| 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 마련 ....       | 10 |
| 3. 대행기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 12 |

## I. 제안경위

2025년 9월 30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 단지 구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하수처리수를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②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 ③ (현행과 같음)<br><u>④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
| <u>&lt;신설&gt;</u>                                               | <u>제10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환</u>                                                                                                                                                                                           |

경부 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승인·해제·심사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  
-----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또는-----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②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  
-----  
-----  
-----  
-----  
-----하  
여야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이  
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

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  
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  
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  
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  
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  
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  
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  
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

공공하수도관리청-----  
-----  
-----  
-----  
-----  
-----.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이용  
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  
하수도관리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  
리청-----  
-----  
-----  
-----

|                                                                                               |                                                     |
|-----------------------------------------------------------------------------------------------|-----------------------------------------------------|
| 부터 분기(分岐)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br>-----<br>-----<br>-----<br>-----<br>-----. |
|-----------------------------------------------------------------------------------------------|-----------------------------------------------------|

현행법은 ‘하·폐수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로 정의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로 규정하면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sup>

하·폐수처리수는 2024년 기준 재이용시설 652개소에서 1,168,627천 m<sup>3</sup>가 재이용(재이용률 15.6%)되고 있는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시·도별 물 재이용 하수처리장 개소수]

| 시·도     | 개소수 | 시·도     | 개소수 |
|---------|-----|---------|-----|
| 서울특별시   | 4   | 경기도     | 173 |
| 부산광역시   | 13  | 강원특별자치도 | 64  |
| 대구광역시   | 9   | 충청북도    | 32  |
| 인천광역시   | 17  | 충청남도    | 50  |
| 광주광역시   | 3   | 전북특별자치도 | 55  |
| 대전광역시   | 2   | 전라남도    | 60  |
| 울산광역시   | 8   | 경상북도    | 74  |
| 세종특별자치시 | 8   | 경상남도    | 72  |
| 제주특별자치도 | 8   | 계       | 652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최근 기후위기로 극한가뭄 및 지역별 강수 양극화 등으로 지역별 물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sup>2)</sup> 있으나, 현재 하수 재이용은 지자체(공공 하수도관리청)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관할 지역 외 시설로의 재처리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과 광역 간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물부족 지역에 대한 재이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적 물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관할 지역 외로의 재처리수 공급 요청에 대하여 지

2) ① 광주·전남지역 281일 최장 가뭄 발생(주암댐 저수율 20.3%, '22~'23), ②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1.8%(국내 최초 자연 재난사태 선포, '25)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상 ‘하수도’ 업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sup>3)</sup>이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sup>4)5)</sup>, 향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6)</sup>.

## 2.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 징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br>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br>요금) ----- |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입장임.

6) 이외에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
|------------------------|---------------------------|
| 공급하는 <u>공공하수도관리청</u> 및 | ----- <u>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u> |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 <u>관리청</u> -----          |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 -----                     |
| 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       | -----                     |
| 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     | -----                     |
| 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 -----.                    |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 -----                     |
|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                     |
|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                     |
|                        | --.                       |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로 하여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7)</sup>

이때의 재처리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sup>8)</sup>되는데, 구체적인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sup>9)</sup>로 정하고 있음.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9) 예시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재처리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

제2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광역 공급망 구축을 전제로 할 경우 시설용량, 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다른 수준의 요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산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0)</sup>.

### 3. 대행기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대행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3항제8호).

10) 참고로, 재이용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수도 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음.

[광역상수도와 하수 재이용수 요금 비교]

단위 : 원/m<sup>3</sup>

| 구 분    | 광역상수도(공업용수) |     |     | 재이용수(R/O 처리) |       |        |
|--------|-------------|-----|-----|--------------|-------|--------|
|        | 침전수         | 원수  | 정수  | 아산신도시        | 청주    | 포항     |
| 단 가    | 498         | 404 | 603 | 872.29       | 607.3 | 558.62 |
| 기본요금   | 328         | 234 | 433 | 872.29       | 607.3 | 558.62 |
| 물이용부담금 | 170         | 170 | 170 | -            | -     | -      |

※ 광역상수도는 K-Water 누리집,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유선으로 조사(2025년 기준)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u>공공하수도관리청</u>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3. -----<br>-----<br>-----<br>----- <u>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u> <u>대행기관</u> , <u>공공하수도관리청</u> -----<br>----- |
| 4. 5. (생략)                                                                                              | 4. 5.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br>-----<br>-----.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u>공공하수도관리청</u>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 8. -----<br>----- <u>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u> <u>대행기관</u> , <u>공공하수도관리청</u> -----<br>-----<br>-----          |
| ④ · ⑤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질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sup>11)</sup>).

개정안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 이와 같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아울러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하·폐수재이용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1 |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